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4819	재물손괴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현혁(기소), 하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경재(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정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취득한 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곳은 피해자 소유 건물로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평소 사용되지 않던 가재도구를 놓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 그 현수막 아래로 출입할 수도 있고 그것이 불편하면 현수막 설치 장소를 옮기면 되나,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한 것은 형사법상의 '상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3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바도 있다. 피고인은 현수막을 곧바로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건물의 소유 및 점유 관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만을 적시하였으나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맥락,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법리오해'도 아울러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막걸리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외벽에 피해자가 설치한 '본 건물 철거예정. 23년 4월 매매 후 내부 건물을 치우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E는 건물 내 무단 점유중인 가재도구 및 자재 등을 치워주기 바라며, 무단 출입 및 무단 주정차 금지 기타 모든 행위 일체를 금합니다'



라고 기재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요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근거

1)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소유자였다가 2022. 10. 7.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해자는 2023. 5. 4.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위 건물을 당초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건물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위 현수막을 떼어내야지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0쪽), 이러한 피해자의 현수막 설치행위는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3)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달성해야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점유를 방



해하기 위해 위 건물 출입문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현수막을 떼어내 보관한 행위는 그와 같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 위 현수막을 1시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다시 설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5, 54쪽).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 항소 인용

1) 판단 요지

살피건대, 원심이 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현수막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가 정당 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근거

가) 이 사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가사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으로 부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현수막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이상 이는 재물손괴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훼손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이상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민사상 방해배제가처분신청 등 가처분신청이나 방해배제청구 등 민사본안소송의 제기 등 다른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고 자구행위의 요건인 보충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유자인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손괴한 것은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이를 수거하거나 치워달라고 요청한 바 없고, 손괴 후에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다시 설치하여 주었을 뿐이다.

마)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유권을 침해한 이상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가처분신청 등 수단이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결국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내용증명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원심 및 당심 변론에 현출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5

판사 김성열 _____

판사 이은정 _____